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26 선고 2020가단1820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, 담당변호사 정상철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0. 9. 28

판결 선고 2020. 10. 26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8, 925, 777원 및 이에 대한 2019 . 7. 20. 부터 2020 . 5. 29.까지는연 6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는 주식회사 C(이하 'C'이라 한다)이 용인시 기흥구 D 토지 일대에 신축하는 아파트의

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,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중 일부를 대출해 주기 위하여, 2010. 4. 6. E조합, F회사과, E조합이 그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대출하여 주고 원고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, E조합은 2010. 12. 6. 피고에게 분양대금 중 계약금의 1/2을 대출하여 준 사실, 그런데 피고가 그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, E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(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719)을 제기하였고, 그 소송의 항소심(서울고등법원 2016나2046053)에서 원고는 E조합에게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, 이에 원고는 2019. 7. 19. E조합에 위 판결에 따라 38,925,777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38,925,77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. 7. 20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. 5. 29.까지는 상법 소정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조상민